

제목 :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(동반협력기업용)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08.16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생략> 제1조 ~ 제3조 <생략> 제4조 (상생매출채권의 발행) ① <생략> 1. <생략> 2.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하며, <u>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 일 이내로 합니다.</u> 3. <생략> ② ~ ③ <생략> 제5조 ~ 제8조 <생략> 제9조 (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<u>“대·중소기업협력재단”</u>이 상생매출채권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. ① <생략>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<u>“대·중소기업협력재단”</u>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인은</p>	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좌동> 제1조 ~ 제3조 <좌동> 제4조 (상생매출채권의 발행) ① <좌동> 1. <좌동> 2.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하며, <u>최장 만기일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 3. <좌동> ② ~ ③ <좌동> 제5조 ~ 제8조 <좌동> 제9조 (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<u>“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”</u>이 상생매출채권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. ① <좌동>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<u>“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”</u>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만</p>	<p>채권만기일 내용 변경</p> <p>재단명 변경</p> <p>재단명 변경</p>

<p>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, 이자청구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제10조 ~ 제11조 <생략></p> <p>제12조 <u>(면책)</u></p> <p>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<u>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② <u>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13조 <생략></p>	<p>사용되며 본인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, 이자청구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제10조 ~ 제11조 <좌동></p> <p>제12조 <u>(손실부담 및 면책)</u></p> <p>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<u>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13조 <좌동></p>	<p>문단전체변경</p>
--	--	---------------